

일반공급(1·2순위)청약안내

■ 일반공급(1·2순위) 신청일정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 (해당지역)	2021.03.31(수) 08:00 ~ 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청약Home'
1순위 (기타지역)	2021.04.01(목) 08:00 ~ 17:30		
2순위	2021.04.02(금) 08:00 ~ 17:30		

■ 일반공급 청약 자격

구분	순위별 조건				
	거주지역	당첨사실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청약통장
1순위 (당해지역)	대구광역시[6개월 이상] (세대주만 가능)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 '청약Home' 청약제한사항 확인	무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 가점제 *1주택자 : 추첨제 (청약시, 주택 소유여부 선택에 따라 자동 분류)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및 경상북도(세대주만 가능)				
2순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세대원 가능)	무관		무관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기간, 예치금 무관)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까지)				
재당첨제한	• '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당첨자	• 각 타입별 일반공급물량의 3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 (동일 점수 경쟁 시 추첨)				
유의사항	• 장기간 해외 체류자 및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체류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하거나, 청약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유의사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2) 청약예금 ① 주택규모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 → 청약예금 통장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구분	오페라 센텀파크 서한이다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해당사항 25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	1,000만원	500만원

※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함.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